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24
------------	------

발의연월일 : 2017. 4. 5.

발의자 : 이종명 · 유민봉 · 최연혜  
신보라 · 김용태 · 김현아  
송희경 · 김정재 · 김종석  
심재권 · 김성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에 관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의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군인들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주택의 우선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p> <p>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u>무주택세대주</u>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 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p> <p>② · ③ (생 략)</p>	<p>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p> <p>-----</p> <p>---<u>무주택세대구성원</u>-----</p> <p>-----</p> <p>-----. -----</p> <p>-----</p> <p>-----</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